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사 감면 등 7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개정된 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1.12.31)되어 이관 : 6개 조문 삭제

연번	감면 조문		감 면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내용		개정내용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1	제3조	제38조 3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2	제5조	제15조 2항	지방공사, 자치단체 출연법인 농수산물·지하철공사 및 공단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75%	지특법이관
		제63조 4항 제85조의2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3	제6조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동일	지특법이관

4	제8조	제56조 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50% 100%	동일 50%	지특법이관
5	제9조	제60조 4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50%	지특법이관
6	제12조	제58조 4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100%	50%	지특법이관

-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정비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100%) 규정
- 객실요금 인하율 규정: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감면조례의 인용법규 등 정비
 - 목적(안 제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감면신청 등(안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안 제16조)
 - ※ 감면조례 부칙에 '12. 1. 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일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2.1.1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1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중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6개 감면조항 삭제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현행 제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행 제5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현행 제6조),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현행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현행 제9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현행 제12조)
 -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감면율 상이에 따른 조세불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감면율 100%를 유지함.

- 안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이관되어 감면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본문은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을 감면조례로 규정함.
- 감면 조례의 인용 법제명을 현행 법제명에 맞게 수정
 - 안 제1조(목적),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14조(감면신청 등), 안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3.2%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감면수준인 14%대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장기과다 지원되어온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감면 조문		감 면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내용		개정내용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제2조	제38조 4항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재산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제3조	제38조 3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제5조	제15조 2항 제63조 4항 제85조의2	지방공사, 자치단체 출연법인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75%	지특법이관
		농수산물·지하철공사 및 공단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제6조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동일	지특법이관

제8조	제56조 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50% 100%	동일 50%	지특법이관
제9조	제60조 4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50%	지특법이관
제12조	제58조 4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100%	50%	지특법이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0 호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사 감면 등 7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개정된 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1.12.31)되어 이관 : **6개조문 삭제**

연번	감면 조문		감 면 대 상	감 면 세 목	감면내용		개정내용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현행 (조례)	신설 (지특법)	
1	제3조	제38조 3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지특법이관
2	제5조	제15조 2항 제63조 4항 제85조의2	지방공사, 자치단체 출연법인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75%	지특법이관
			농수산물·지하철공사 및 공단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동일	
3	제6조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동일	지특법이관
4	제8조	제56조 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감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50% 100%	동일 50%	지특법이관
5	제9조	제60조 4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감면	재산세·등록면허세	100%	50%	지특법이관
6	제12조	제58조 4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100%	50%	지특법이관

나. 조례로 위임한 감면을 정비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납세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율(100%) 규정

다. 객실요금 인하율 규정: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라. 감면조례의 인용법규 등 정비

○ 목적(안 제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3조), 감면신청 등(안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안 제16조)

※ 감면조례 부칙에 '12. 1. 1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

마.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일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3.23)

라. 기 타

(1) 입법예고(2.23 ~ 3.14)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세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세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

1. 특급호텔 : 20%
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0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 -----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생략)	<삭 제>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를-----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삭 제>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삭 제>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생략)	<삭 제>
제9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생략)	<삭 제>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생략)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과 같음)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면) (생략) 제13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생략) 제1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15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 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분의 5를 경감한다.</p> <p>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p> <p>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p> <p>가. 특급호텔: 20%</p> <p>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p> <p>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p>	<p>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른 객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p> <p>1. 특급호텔 : 20%</p> <p>2.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p> <p>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과 같음) <삭제></p>
보 칙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생략)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생략)	제13조(감면 제외대상)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 -----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규칙」 ----- ----- -----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규칙」 ----- ----- -----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 -----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 ----- -----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생략)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현행과 같음)
제23조(시행규칙)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